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7
----------	-----

제출년월일 : 2013.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지역에 대한 광고물에 외국어 병기(안 제11조)

-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음(법 제5조)
-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나.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하는 근거 신설(안 제23조제7항)

- 옥외광고업자교육 관련, 상시교육이 불가하므로
-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

다.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안 제24조제3항·제4항)

-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 수수료 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목적 광고물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2.11.1 ~ 11.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 완료, 규제사무 없음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7.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창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허가 및 신고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검인, 압인 또는 천공(별지 제2호 서식)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 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 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40퍼센트는 여성으로 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주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평창군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은 주민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주민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그 밖에 주민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군수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강원도지사와 사전협

의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외국어를 병기하는 구역의 범위
2.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평창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이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⑧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⑨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옥외광고물 관련업무 소관 부서의 담당이 간사가 되고 주무관은

서기가 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위탁지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위탁지정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검사원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 검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별지 제6호 서식 작성)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 및 인수증(별지 제9호 서식)을 받는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반납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별지 제11호 서식)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확정된 이후라도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필증(별지 제11호 서식)을 발급하고 교육이수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불참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되었을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교육위탁지정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위탁지정서(별지 제15호 서식)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이수대장(별

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평창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과 협의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25만원
- 3.1㎡ 이상 4.0㎡ 이하	3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0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0만원
- 6.1㎡ 이상 7.0㎡ 이하	60만원
- 7.1㎡ 이상 8.0㎡ 이하	70만원
- 8.1㎡ 이상 9.0㎡ 이하	8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0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0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2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80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25만원
- 3.1㎡ 이상 4.0㎡ 이하	3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0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0만원
- 6.1㎡ 이상 7.0㎡ 이하	60만원
- 7.1㎡ 이상 8.0㎡ 이하	70만원
- 8.1㎡ 이상 9.0㎡ 이하	8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0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0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2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8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30만원
- 0.6㎡ 이상 1.0㎡ 이하	33만원
- 1.1㎡ 이상 2.0㎡ 이하	38만원
- 2.1㎡ 이상 3.0㎡ 미만	45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50만원
- 3.6㎡ 이상 4.0㎡ 이하	60만원
- 4.1㎡ 이상 4.5㎡ 이하	80만원
- 4.6㎡ 이상 5.0㎡ 미만	90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100만원
- 6.1㎡ 이상 7.0㎡ 이하	120만원
- 7.1㎡ 이상 8.0㎡ 이하	140만원
- 8.1㎡ 이상 9.0㎡ 이하	16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180만원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3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3만원
- 3.1㎡ 이상 4.0㎡ 이하	38만원
- 4.1㎡ 이상 5.0㎡ 미만	45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0만원
- 6.1㎡ 이상 7.0㎡ 이하	60만원
- 7.1㎡ 이상 8.0㎡ 이하	70만원
- 8.1㎡ 이상 9.0㎡ 이하	8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0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10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2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8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200만원
- 25.1㎡ 이상 30.0㎡ 이하	230만원
- 30.1㎡ 이상 35.0㎡ 이하	240만원
- 35.1㎡ 이상 40.0㎡ 이하	250만원
- 40.1㎡ 이상 45.0㎡ 이하	260만원
- 45.1㎡ 이상 50.0㎡ 미만	280만원
5) 연면적 50㎡ 이상	300만원 +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4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50만원
-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60만원
- 연면적 21㎡ 이상	60만원 +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5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
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4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50만원
-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60만원
- 연면적 21㎡ 이상 7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

2) 교통안내소

가로형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
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
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15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10만원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10만원
- 1.1㎡ 이상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35만원
- 4.1㎡ 이상 5.0㎡ 미만 45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4만원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기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2,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24,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1,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10,000원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3,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3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p>바. 지주 이용 간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m² 이하 - 연면적 10m² 초과시 1m²마다 더하는 금액 	<p>12,000원</p> <p>2,000원</p>
<p>사. 애드벌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p>10,000원</p> <p>옥상간판에 준함</p> <p>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p>
<p>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m² 이하 - 연면적 1m² 초과시 1m²마다 더하는 금액 	<p>2,000원</p> <p>1,000원</p>
<p>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또는 연면적 5m²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m² 초과시 1m²마다 더하는 금액 	<p>4,500원</p> <p>5,000원</p>
<p>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선 - 비행기 · 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 선박 - 사업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p>400,000원</p> <p>10,000원</p> <p>2,000원</p>
<p>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p>	<p>3,000원</p>
<p>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p>	<p>3,000원</p>
<p>파. 현수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수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m² 이하 - 10m² 초과시 1m²마다 더하는 금액 	<p>3,000원</p> <p>1,000원</p>

2) 현수막 게시시설	
- 10m ² 이하	5,000원
- 10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하. 벽보(1건)	2,500원
거. 전단(1건)	2,500원
니.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등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과 관련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14,000원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20,000원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14,000원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21,000원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38,000원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14,000원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20,000원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도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11,000원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600원
아. 그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p>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p>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p>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p>라) 연면적 3㎡ 이상</p> <p>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p>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p>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p>법 제20조제1항제1호</p>	<p>12만원</p> <p>17만원</p> <p>25만원</p> <p>35만원</p> <p>42만원</p> <p>58만원</p> <p>67만원</p> <p>92만원</p> <p>117만원</p> <p>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p> <p>7만원</p> <p>10만원</p> <p>13만원</p> <p>17만원</p> <p>25만원</p> <p>42만원</p> <p>50만원</p> <p>58만원</p> <p>75만원</p>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8만원
- 1.1㎡ 이상 2.0㎡ 이하	12만원
- 2.1㎡ 이상 3.0㎡ 미만	13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17만원
- 3.8㎡ 이상 4.4㎡ 이하	22만원
- 4.5㎡ 이상 5.0㎡ 미만	25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35만원
- 6.1㎡ 이상 8.0㎡ 이하	50만원
- 8.1㎡ 이상 10.0㎡ 미만	58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가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2천원
- 21장 이상	장당 33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3천원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50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83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167만원
라. 1년 이상		333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 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지 제2호 서식]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p>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p> <p>사 진 (3.5×4.5)</p> <p>평 창 군</p>

< 뒤 쪽 >

<p>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p> <p>자 격 기 한(20 . . . ~ 20 . . .)</p>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p> <p>년 월 일 평 창 군 수 직인</p>

[별지 제6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 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별지 제7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 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 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별지 제8호 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일련 번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별지 제9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별지 제11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및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직인

[별지 제13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별지 제14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직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없음

3.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연락처	(033) 330 - 2470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 ④ 시장등은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시장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併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옥외광고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이 다른 시·군·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이하 "간판표시계획서"라 한다)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판표시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수량 등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4. 제2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위원의 성명·주소
 5.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6.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7.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2. 자율관리협정의 주요 내용
- ⑤ 자율관리협정은 그 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 ⑥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원의 합의로 시장등에게 자율관리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⑦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등으로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가 아닌 자는 주민협의회에 의사를 표시하고 자율관리협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회는 그 가입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 ⑧ 시장등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 의견의 청취 후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주민협약회의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약회의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약회의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민협약회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약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28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3.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4.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시장등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